

#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of Los Angeles [OKTA LA]

## 정 관

### Articles of Association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로스앤젤레스 한인무역협회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of Los Angeles : OKTA LA)라 칭한다.

##### 제2조 (구성)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남가주 지역에서 거주하며 무역업 또는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한인 기업인으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거 본 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
2. 차세대 무역스쿨을 졸업한 25세 이상의 남가주 지역 거주자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한자
3.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하거나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거 본 협회의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로 영입된 자로 구성된다.

##### 제3조 (목적)

비영리 단체인 본 협회의 목적은 남가주 지역에서 무역업 또는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한인 기업인들 간의 업무 협조와 무역정보의 교환, 본국 기업인들 및 해외 타 지역 한인 기업인들과의 교류와 교역증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 제4조 (주요 사업)

제3조에 규정된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수행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 무역정보 교환 (간행물 및 internet 등의 매체 이용)
2. 무역 및 경제 관련 세미나 개최
3. 재외동포 무역을 지원하는 KOTRA 사업에의 공동 참여
4. OKTA 본부 및 지회와의 협력 모색
5. 한국 정부의 무역진흥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6. 경제 관련 단체들과의 업무 협력
7. 동포 사회를 위한 공익 사업
8. 차세대 무역인을 위한 교육

#### 제5조 (업무장소)

본 협회의 사무국은 Los Angeles 시내에 둔다.

### [제 2 장 회 원]

#### 제6조 (분류와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누어지며 각 회원은 제2조에 규정된 해당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각 회원은 회기의 3분기말(9월30일) 까지 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당 회계년도 회원자격이 유지되며 2회계년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제7조 (입회 절차)

본회의 회원자격은 입회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접수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후 승인된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입회 승인이 결정 되면 연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의 승인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8조 (권리및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회원은 회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 할수없다. 준회원은 회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는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예회원 및 명예이사는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나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제9조 (혜택)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World-OKTA의 정회원이 되며 World-OKTA 및 KOTRA의 network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회의 준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World-OKTA 차세대 무역스쿨 위원회에 소속된다.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수혜할 자격을 갖는다.

## 제10조 (상벌)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상을 수여하거나 징계 또는 벌을 행 할 수 있다.

1. 상: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본 회의 위상을 높인 회원
2. 벌: 다음의 경우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위 제8조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 나. 본 회의 사업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본 회에 대한 음해 부정 행위
  - 마. 형사범으로서의 유죄 확정
  - 바.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회원

3. 징계는 견책, 근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및 제명으로 나뉘어지며 이사회는 해당 사항의 경중 및 본 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 징계와 사안의 기간을 정한다.

## [제 3 장 기 구]

### 제11조 (조직)

본 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감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로 분과위원회 및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기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2조 (자문위원 상임고문,명예고문)

1. 자문위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Los Angeles 소재 KOTRA의 관장은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2. 상임고문: LA 한인 무역협회 전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3. 명예고문: World OKTA 전,현직 회장,이사장은 자동으로 명예고문 이 되며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인사중 약간명의 명예고문을 둘수 있다
4. 상임고문,명예고문은 본회의 이사와 동등한 자격에 해당하며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사회인사중 명예고문은 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이 없다.)

### 제13조 (사무국)

집행부 임원의 직무 수행을 돕고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소수의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은 본 회의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없다.

## [제 4 장 집행부]

### 제14조 (구성)

집행부는 회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내, 총무 1인, 재무 1인, 서기 1인, 홍보 및 섭외 1인 및 분과 위원장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집행부 임원이 된다.

### 제15조 (직무)

집행부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집행부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 회의 위상과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부회장(수석 부회장 포함):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재무: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단, 본 회의 경비 지출을 위한 수표는 회장, 부회장 및 재무 중 1인의 서명으로 발행될 수 있다.
5. 서기: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기타 본 회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6. 홍보 및 섭외: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7. 분과위원회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제 5 장 임원의 선출과 임기]

### 제16조 (회장 자격과 선출)

1. 본회의 회장 자격은 최소 5회계년도(fiscal year)이상 연속 이사 재임 경력과 재임 기간중 2년이상 운영위원으로 봉사 경력을 겸비 해야 한다.
2. 회장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3. 회장 선출은 임기 만기해 4/4 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 받는다.

### 제17조 (집행부 선출및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기 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후임자를 임명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선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직전전 회장이 수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은 회장 임기 만기 해 4/4 분기 정기 이사회 21일 (주말 제외시 15일전) 전에 구성 하여야 하며 선거 관련 규정은 본정관의 선거관리 운영세칙을 따른다

## [제 6 장 이 사 회]

### 제1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장 1인, 수석 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내지 5인,고문이사및 20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 제20조 (직무)

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며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 회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안, 정관의 개정, 상벌의 수여 또는 부과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2. 부이사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장의 유고시 수석 부 이사장이 이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4. 고문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자문에 응한다.

### 제21조 (이사 선임 및 자격)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이사장: 회장이 추천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2. 이사장은 최소 4회계년도(fiscal year)이상 연속 이사로 봉사한자 이어야 한다.
3. 수석 부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추천 하여 이사회에서 추인 한다.
4. 이사: 정회원중 2명 이상의 이사 추천으로 이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영입한다.
5. 고문이사: 전직 이사장은 당연직 고문이사가 되며 이사로서 15년이상 연속협회에 봉사한 자중 65세 이상인 자는 회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고문이사로 위촉한다.

## 제22조 (임기 및 해임)

1.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정관 제10조 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이사의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 될 수 있다.

## 제23조 (소집 및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통해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매분기마다 한 번씩 총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이사회) 성원 및 의결)

1. 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2.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원 정족수 계산상 위임자를 포함한다. 단, 위임을 하는 이사는 위임 사실을 회의 시작전에 회장,이사장,총무 또는 사무국에 email, 팩스 문자및 공개된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의 내용 및 통보를 받은 시간을 기재한 서면 기록을 회의 시작 전에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 7 장 운영위원회]

### 제25조 (구성과 직무)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임원,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감사, 각분과 위원장 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제26조 (소집)

운영위원회의 모임은 이사장의 요청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제 8 장 감 사]

### 제27조 (선임과 직무및 자격)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2인의 감사를 두어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년2회 실시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
2. 감사 선출시 2인 이상의 후보가 있을경우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와 차위 득표자를 선출한다.
3. 감사 후보자는 최소 4회계년도(fiscal year)이상 연속 이사로 봉사한자 이어야 한다.

### 제28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다.

## [제 9 장 회원 총회]

### 제29조 (개최)

본 회의 정기 회원총회는 연 2회를 개최하며 1차는 1월중, 2차는 11월중에 Los Angeles에서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원총회 개최일 현재 등록된 정회원으로서 본 정관 제31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회원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0조 (총회 성원 및 의결)

1. 본 회의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의 수에 관계 없이 성원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정관의 개정
4.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기타 주요 안건

**2.의장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 10 장 재 정]

### 제31조 (회비)

정회원 및 준회원은 매년 해당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수있다.

### 제32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은 매년 해당 직책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 장:	\$10,000.00 이상
이사장:	\$ 5,000.00 이상
수석 부회장 및 수석 부이사장:	각 \$ 2,500.00 이상
부회장 및 부이사장:	각 \$ 1,500.00 이상
감 사:	\$ 1,500.00 이상
이사 및 고문이사:	각 \$ 750.00 이상
<b>정회원:</b>	\$350 이상
준회원:	\$150 이상

집행부 임원들과 이사들은 상기 직책에 따른 연회비 외에 기부금 및 지원금의 유치와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입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지출)

본 회의 재정은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 행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예비비 내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되 사후 이사회 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회계보고)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말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기중에 발생한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 [제 11 장 부 칙]

### 제 35조 (회의록)

1. 정기및 임시 이사회및 총회에 대한 회의를 록취, 기록하고 다음 이사회시에 지난 회의에서 통과한 안건및 결정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완료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확인 한다.
2. 회의록은 해당년도의 회장단에서 관리하여 차기 회장단에 인수인계하며 인쇄물과 전자문서로 최소 10년간 사무국에 보존 한다.
3. 회의록은 해당년도의 회장단에서 잘 관리하여 차기 회장단에 인수인계 되어야하며 프린트와 PDF file 인쇄물과 전자문서로 최소 10년간 사무국에 보존 되도록 한다.

### 제3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fiscal year)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7조 (인수 인계)

신구 집행부의 인수와 인계는 회계년도 종료 1주 이내 까지 완료 한다.

### 제38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정기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을 정기 또는 임시 회원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하면 개정 할수 있다

### 제39조 (해산)

본 회의 해산에 관한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후,정기회원총회 또는 임시회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채택될 수 있다.

#### 제40조 (세칙)

이사회는 본 정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운영세칙은 본 정관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 제41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42조 (효력)

개정정관은 제38조 규정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승인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 OKTA LA 운영 규정 및 세칙 ]

#### <제 1장 선거 관리 운영 규정>

본회의 선거 관리를 효율적이고 객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정관 제 11장 제40조에 따라 선거 관리 운영세칙을 정한다.

#### 제1조 (총칙)

본회의 정관 제 5 장 18조에 따라 선거 관리규정을 정하며 “선거 관리 운영 세칙” 이라 칭한다

#### 제2조 (선거 관리 위원회)

본회의 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본회의 화합과 발전및 선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둔다.

1. 선관위는 회장 임기 만기 해 4/4분기 정기 이사회 21일전 (주말 제외시 15일 전) 까지 구성 한다  
가) 선관위구성 3일 이내  
나) 후보등록 2일

- 다) 후보검증 2일
- 라) 후보 미비 사항 보완 2일
- 마) 등록 후보 공지 : 1일
- 바) 후보 선거 운동 5일

2. 선관위구성은 구성이 완료된 즉시 전 회원에게 공포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 : 직전전 회장이 위원장을 수행한다.
4. 선거관리 위원: 본회 정회원중 2명을 선거관리 위원장이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선관위의 의사 결정시 3인의 선거관리 위원중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6. 참관인 : 후보는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각 2명씩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선거진행 및 개표 상황등에 선거관리 위원을 도와 업무를 진행 한다. 단, 참관인은 본 회의 정회원 이상 이어야 한다.

### 제3조 (회장 후보자의 자격)

본회의 회장 입후보자는 아래의 각항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본정관 제 5장 제16조 (회장자격 과 선출) 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정관 제 10 조 상별 위원회 2 항, 3 항 및 기타 본 정관에 위배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한다.

### 제4조 (회장 후보 등록)

1.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구성이 공포 된 다음날 부터 2일 이내 (주말 제외)에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회장 입후보 등록시 등록비용 \$1,000 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당락에 관계없이 본협회 재정에 귀속 된다.  
(회장 당선시 직책비와 별도)
3. 회장 후보등록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협회의 확인을 받은 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선관위의 소정양식) 2부

(협회보관 1 부, 선관위 보관 1부)

나) 후보등록비 \$1000

다) 회장 후보 공약사항

4. 당해 년도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등록된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5조 (유권자 자격)

1. 본협회 이사

2.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입회 하였고 전년도 회비를 완납 하였으며,

당해 년도 협회 회비를 9월 30일 5시 전까지 납부 완료 한자.

2.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자.

#### 제6조 (후보등록 접수및 투표 준비)

1. 선관위는 등록 후보에게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접수 후 2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보완 요청후 2일 이내에 미비 사항을 보완 해야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미비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후보 자격을 득할 수 없다.
2.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이 있음을 통보 받았더라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격 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선관위는 선거일시, 장소, 등을 정하고 사무국으로 부터 유권자 명부를 인수 받아 선거 7일전 까지 투표용지 교부서 발행을 완료 한다.

#### 제7조 (선거)

1. 선거는 **이사회에서** ,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일은 회장임기 만기해에 해당되며 4/4 분기 정기 이사회 에서 선출하며 정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3. 유권자는 투표당일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임한다.
4.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한 표만 인정하며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8조 (당선 기준)

1.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일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2. 회장 입후보자가 3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일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1명의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만으로 2차 투표를 즉시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3. 만약 2명의 후보가 동표 일 경우 제비 뽑기로 정하며 제비뽑기 방법은 본회의 투표 시행 규정을 따른다.

## 제9조 (개표 및 결과 발표)

1. 개표는 선거가 완료된 후 선관위가 진행하며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과 함께 공명정대 하게 개표한다.
2. 선관위는 즉시 개표결과를 집계, 발표하고 당선기준에 따라 당선을 선포하고 회장 당선증을 수여한다.

## 제10조 (일반 원칙)

1. 선관위의 제반 재정은 본회에서 충당 한다.
2. 선거당일 각 입후보자들의 의견 발표는 10분 이내로 제한 한다.
3.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후보검증후, 선관위의 선거운동 개시 공지이후 부터 시행 할 수 있다.
4. 개표된 투표용지는 선관위와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하여 최소 1년간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 11조 (부정선거 금지)

1. 불법선거(금품살포,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행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2. 당선을 목적으로 회비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행위를 금한다.
3. 부정투표 (대리투표, 투표용지 조작, 개표조작) 를 금한다.

4. 본규정 12조 2항 회비대납의 경우와 본규정12조 3항 부정투표 당선이 확인 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공표하고 차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 한다.
5. 부정 투표가 확인된 경우 시행한 상대가 어느 후보인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시행 한다.

#### 제12조 (기타)

1. 본규정에 기재 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선거법 관례에 의하여 선관위가 결정 시행한다.
2. 선관위의 결정은 번복 될 수 없다.

#### 제13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해체)

선관위는 선거 완료후 10일 이내에 선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정리하여 사무국에 이관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 개정 시행에 관한 규정

본 정관은 2011년 1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한다.

본정관은 2015년 7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본정관은 2016년 9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본정관은 2018년 7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본정관은 2019년 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